

[보고]

## 차기 총장 선임 방식에 대한 진행 경과 보고(7)

차기 총장 선임 관련 진행 단계에서 의미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고려하여 직원 구성원들께 몇 가지 사항과 예상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법인 이사회의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 제정 임박

- 현재 확인된 바로는 법인 이사회가 5월 31일 예정돼 있고, 안건으로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 제정안(경과 보고-6(5. 24.) 붙임 참고)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된 이사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경우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총장추천규정)이 법인 규정으로 성립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교수회는 자체 규정류 개정을 위한 의결과정을 밟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수회가 의결과정에 들어간 것은 자체 규정 및 규칙 등이 총장추천규정안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수회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노동조합과 직원사회가 총장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근거인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총장추천규정안이 서로 배치되거나 규정 또는 법령 위반 문제의 소지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단체협약 제28조(총장후보선출)에 따르면 총장선출 방식을 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에 민주적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총장추천규정안의 조항에 다소간 아쉬운 바는 있으나 직원위원이 5명 참여하여 협·합의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제28조(총장후보선출)** 총장선출 방식의 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

- 차후 결정단계에 맞춰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의 직원위원 추천, 참여방식의 결정 등에 대해서 직원사회 전체 의사를 묻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직원사회의 위상 정립과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총장추천규정 제정 시 예상되는 절차에 대해

- 총장추천규정을 법인에서 제정할 경우, [붙임: 총장추천규정 제정안]의 제3조(권한)와 같이 주요 권한 및 기능이 ‘입후보자 자격 심사 검증, 총장후보자의 이사회 추천, 총장후보자 등록,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 등’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총장후보자 추천의 실질적 권한이 총추위에 있고 직원위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

서,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 바랍니다.

◎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 제정(이사회 의결)** ⇨ 총추위 구성을 위한 구성원 추천 요구 (법인) ⇨ 총추위 위원 추천(구성단체별) ⇨ 총추위 구성 완료(총추위) ⇨ 총장입후보자 공모 및 등록(총추위) ⇨ 총장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검증(총추위) ⇨ 총장입후보자 선정 완료(총추위) ⇨ 총장후보자 선출(정) 절차 위임(총추위 → 교수회) ⇨ **직원 참여방식 확정(직원, 교원)** ⇨ 총장후보자 선거 절차 개시(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 ⇨ 총장후보자 추천(교수회 → 총추위) ⇨ 총장후보자 접수 및 추천(총추위 → 법인 이사회) ⇨ 최종 검증(이사회) ⇨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이사회 의결)

- 상기와 같이 예상되는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교수회 자체 규정에 기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은 성립될 수 없으며, 특히 비민주성, 위규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규칙이 완비되고 절차가 온당하게 진행될 때, 총장후보자의 선거일정이 수립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미 [경과 보고-6(5. 24.)]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거규칙의 성립과 공정선거 공표까지 직원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보류 조치를 유지하겠습니다.
- 4차례에 걸친 법인 주관의 3자 협의가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합리적 논의 과정이었습니다. 직원대표로 참석한 2인(위원장, 대의원의장)은 각 회차마다 직원사회의 핵심적 요구사항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총장 임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순행되더라도 이 과정 중에 직원의 참여방식 협의 절차가 훼손되거나 중지됐을 경우에 상기 전체 총장 임명(선출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질의했고, 법인 이사회 위원단으로부터 이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교수회로부터 법인의 방향에 경도됐다는 주장까지 들으면서 시대 흐름과 법적 제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는데 단체협약의 정신을 위반하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직원구성원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조합과 직원사회는 현행 총장선출제도가 민주성에 반하는 봉건적 관행임을 누차 지적하며 시대정신과 민주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대학에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총장선출 방식 확립이 가장 핵심적인 직원 구성원의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직원 사회의 뜻을 받들어 3자 협의 내용이 성실히 준수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발전을 위한 총장선임 방식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노동조합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 행정관리자협의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8.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